



TaxFlash

Tax Indonesia / January 2025 / No. 03



Indonesia officially implemented the Pillar Two GloBE Rules implementation¹

인도네시아 Pillar 2 글로벌최저한세(GloBE) 규칙 도입

2024년 12월 31일, 재무부 장관(MoF)은 글로벌 세원 잠식 방지(Global Anti-Base Erosion, GloBE) 규칙에 따른 추가 세금 부과(Top-up Tax) 방법이 기재된 PMK-136¹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GloBE 규칙에 부합하도록 제정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GloBE 규칙은 저세율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 MNE)에 대해 최소 15%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서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채택한 추가 세금 부과(Top-up Tax) 메커니즘으로는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IIR), 소득산입보완 규칙(Undertaxed Payment Rule, UTPR), 소재지추가세(Domestic Minimum Top-up Tax, DMTT)가 있습니다. IIR과 DMTT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되며, UTPR의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회계연도는 GloBE 도입에 따른 추가 세금이 부과되는 연도를 의미합니다. 본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MNEs 및 세이프 하버(Safe Harbour) 평가

1. MNE 및 구성 기업(Constituent Entities, CEs)의 식별

GloBE 규칙은 최종모기업(Ultimate Parent Entity, UPE)의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이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에 각각 7 억 5 천만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MNE) 및 구성 기업(CE)에 적용됩니다. 과거 4년 동안 합병 및 분할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출액 계산에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¹ MoF Regulation No.136 Year 2024 ("PMK-136") dated 31 December 2024 and effective from 1 January 2025

CE는 그룹에 종속된 모든 법인과 모기업의 모든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을 의미합니다.

GloBE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CE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영업이나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정부 기관;
- b. 국제 기구;
- c. 비영리 조직;
- d. 연금 기금;
- e. 최종모기업(UPE)인 투자펀드;
- f. 최종모기업(UPE)인 부동산투자기구.

2. 세이프 하버(Safe Harbour) 평가

CE가 세이프 하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GloBE 규칙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있어 세이프 하버를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PMK-136에서는 다섯 가지 유형의 세이프 하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a. 영구적 세이프 하버;
- b. 전환기 국가별 보고서 (Country by Country Report, CbCR) 세이프 하버;
- c. 특정 기업 및 그룹에 대한 전환기 CbCR 세이프 하버;
- d. 전환기 UTPR 세이프 하버;
- e. 비주요 CE에 대한 간소화된 계산방식을 적용하는 세이프 하버.

위 세이프 하버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A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Top-up Tax 결정

Top-up Tax를 계산하기 위한 개괄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GloBE 이익 또는 손실 산정

GloBE 이익/손실을 산정하기 위해 각 CE의 개별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손실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GloBE 조정항목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a. 일반 조정 – 일반 재무 계정, 이전 가격, 적격 환급 세액 공제(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 및 비적격 환급 세액 공제(Non-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 그리고 그룹 내 금융 거래의 조정을 포함합니다;
- b. 선택적 조정 – 주식 기준 보상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손익 실현주의에 따른 조정, 전체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 집계 및 소득 반영, 그룹 내 여러 법인의 세금을 통합 및 과세하는 방법을 포함합니다;

- c. 특정 조정 – 보험 회사, 은행, 국제 해운 소득, PE, 및 도관 법인(Flow-through Entity)을 포함한 특정 법인형태에 대한 조정을 의미합니다.

기업 구조 조정 및 소유 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 세금 중립성 및 배당 원칙을 고려하여 최종모기업(UPE) 및 구성 기업(CE)에 대해서는 GloBE 손익 계산에 있어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2. 조정대상조세(Adjusted Covered Tax)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 ETR)을 계산하는데 있어 고려되는 대상조세(Covered Tax)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a. 해당 CE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또는 해당 CE가 소유지분을 보유한 다른 CE의 소득 또는 이익 중 그 소유지분의 보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
- b. 적격분배세제도(Eligible Distribution Tax System)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이 분배하는 금액(분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을 포함) 또는 지출된 업무무관비용에 부과되는 세금;
- c.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 대신에 부과되는 세금;
- d. 이익잉여금 및 자본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소득 및 자본에 기초한 복수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금을 포함)

대상조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적격소득산입규칙(Qualified IIR)에 따라 모기업이 납부하는 Top-up Tax;
- b. CE가 납부하는 적격소재지추가세액(Qualified DMTT, QDMTT) 및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Qualified UTPR)에 따라 CE가 납부하는 Top-up Tax;
- c. CE가 지급하는 배당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Disqualified refundable imputation tax);
- d.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에 대해 보험회사가 납부하는 세금.

조정대상조세는 재무회계상 구성기업의 순이익/손실에 따른 당기 법인세 비용에서 다음 사항을 조정하여 산출됩니다:

- a. 해당 회계연도의 대상조세의 순 증감액;
- b. 이연법인세조정금액(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의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 15%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
- c. GloBE 이익/손실 계산에 포함되고 CE의 소재지에서 과세대상인 손익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회계상 자본 항목 또는 기타포괄손익 항목에 반영된 대상조세의 증감액.

PMK-136은 또한 고정사업장, 투시과세기업(tax transparent entity), 피지배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mpany), 혼성기업 및 배당을 지급하는 CE에 대한 대상조세의 소재지를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소재지 실효세율(ETR)

ETR은 글로벌 최저한세율 15%와 비교하게 됩니다. 소재지 ETR은 조정대상조세를 GloBE 손익으로 나누어 계산되며, 조정대상조세 및 GloBE 손익은 모두 소재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투자 법인, 국적 미상의 CE, 그리고 최종 모회사의 소유 지분이 30% 이하이지만 지배적 이익을 가진 소수지분구성기업(Minority-owned CEs, MOCE)의 경우, 소재지 ETR은 타 그룹 구성기업과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4. 소재지 초과 이익 및 실질기반 제외소득금액(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SBIE)

소재지 초과 이익은 순 GloBE 손익에서 SBIE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되며, SBIE를 통해 해당 소재지의 Top-up Tax 부담은 효과적으로 감소됩니다. SBIE는 동일 소재지에 위치한 모든 CE들의 급여 관련 제외금액 및 유형 자산 장부가액 관련 제외금액을 합산하여, 투자 법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외금액 또는 SBIE 금액은 급여 및 유형 자산 장부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해당 비율은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급여의 경우 10%에서 5%로, 유형 자산의 경우 8%에서 5%로 감소됩니다.

5. Top-up Tax 계산

Top-up Tax 비율은 15% 최저한세율에서 소재지 ETR을 차감하여 계산되며, 소재지별 Top-up Tax는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text{소재지 Top-up Tax} = (\text{Top-up Tax \%} \times \text{소재지 초과 이익}) - \text{QDMTT} + \text{당기 Top-up Tax 가산액(있는 경우)}$$

QDMTT는 소재지의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다음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GloBE 규칙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해당 소재지의 초과 이익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 해당 소재지의 초과이익 금액에 대한 세부담을 해당 초과이익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까지 증가시켜야 합니다;
- 국제적으로 합의한 GloBE 규칙에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되고 소재지에서 Top-up Tax를 부담하는 CE에게 세제 혜택 등 연관된 편익을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분쟁 중인 QDMTT 또는 세무 당국에 의해 징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QDMTT는 추가 세액에서 차감될 수 없습니다.

당기 Top-up Tax 가산액(Additional Current Top-up Tax)은 이전 회계연도의 실효세율을 재계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Top-up Tax 등 당기 회계연도의 Top-up Tax에 가산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최저한세 관련 세금 부과 매커니즘

Top-up Tax 가 결정된 후, 세금을 정산하기 위한 부과 매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DMTT

DMTT 는 소유 비율에 관계없이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모든 인도네시아 CE 에 부과됩니다. 다만, PMK-136 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내 모든 저세율 CE(Low-taxed CEs, LTCE)의 총 GloBE 손익을 기준으로 각 CE 의 GloBE 손익 비중에 따라 비례적으로 DMTT 가 부과됩니다. MOCE, 투자 법인, 합작 투자법인("JV")에 대한 DMTT 는 법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계산됩니다.

재무제표(FS)에 사용된 회계 기준과 실효세율, 순 GloBE 손익, 대상조세, Top-up Tax 를 계산하는 방법은 IIR 및 UTPR 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IIR

UPE, 중간 모회사 또는 부분 소유 모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저세율 국가의 CE(LTCE)로부터 발생하는 Top-up Tax 를 IIR 매커니즘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 매커니즘은 그룹의 소유 구조 및 그룹이 운영하는 소재지에서 GloBE 규칙을 채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UTPR

인도네시아 CE(투자 법인 제외)는 Top-up Tax 가 부과되지 않은 저세율 소재지로부터 인도네시아에 배분된 Top-up Tax 를 UTPR 매커니즘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배분 비율은 인도네시아 내 임직원 및 유형 자산 합계를 UTPR 가 적용되는 모든 국가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비율을 산출하고, 이에 50%를 곱하여 결정됩니다. 해당 UTPR 은 인도네시아 CE 가 부담하며, 각 CE 의 GloBE 손익에 따라 비례적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MNE 그룹이 최대 6 개 소재지에 CE 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모든 CE 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치(Net Book Value, NBV)가 기준 소재지(즉, 유형자산의 NBV 가 가장 높은 소재지)을 제외하고 최대 5 천만 유로에 해당되는 경우, 처음 5 년 동안 UTPR 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기준 소재지이고 LTCE 가 인도네시아에 소재하는 경우, 다른 소재지에 UTPR Top-up Tax 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무 관련 신고 요건 및 기한

GloBE 규칙에 따라 별도의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GloBE 정보 신고서 (GloBE Information Return, GIR) 및 통지(Notification)

GIR 은 CE, 그룹 구조, 실효세율, Top-up Tax, 그리고 GloBE 규칙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 상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Notification 은 CE 가 작성한 서면 통지서로, UPE 및 UPE 가 아닌 국내 납세자와 GIR 제출의무가 있는 지정국내기업 정보가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UPE 가 GIR 을 제출하고, CE 가 Notification 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CE 도 GIR 을 제출하여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CE 는 Notification 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15 개월 이내에 GIR 및 Notification 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제출 기한은 2028년 3월 31일입니다. GloBE 도입 첫 회계연도의 경우 15 개월 대신 18 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우 2027년 6월 30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해당 제출서류의 접수 증명서는 연간 GloBE 세금 신고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2. 연간 세금 신고서(Annual Tax Returns, ATRs) – GloBE 회계연도에 대한 Top-up Tax 를 보고하기 위한 신고서의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GloBE 세금 신고서 – 인도네시아 UPE 에 의해 신고;
- DMTT 세금 신고서 – 인도네시아 CE 에 의해 신고;
- UTPR 세금 신고서 – 인도네시아에 UTPR 가 할당된 경우 인도네시아 CE 에 의해 신고.

위 ATR 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다음 해의 4 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예를 들어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제출 기한은 2028년 4월 30일입니다. GloBE 도입 첫 회계연도의 경우, 제출 기한을 2 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우 2027년 6월 30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관련 세금은 GloBE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PMK-136 에서는 GIR, ATR(GloBE, DMTT, UTPR) 및 Notification 에 대한 양식, 제출 절차, 납부 및 신고에 관한 규정을 관할하는 권한을 국세청장(DGT)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준수 모니터링

DGT는 모든 인도네시아 CE의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GloBE 규칙에 따른 신고 및 납부 의무에 대한 행정적 제재는 일반 세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2026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시작하여 2028년 6월 30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있는 CE의 경우 행정적 제재가 면제됩니다.

특히 DGT는 세이프 하버 규정의 적용을 검토하고, 인도네시아가 저실효세율 소재지로부터 Top-up Tax를 배분받게 되는 경우 이를 확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이프 하버 적용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과 정황이 있는 경우, DGT는 CE에게 GIR 제출 후 36개월 이내에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CE는 6개월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요청사항에 응답하지 못할 경우, 세이프 하버는 무효가 되며,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공시

PSAK 212의 개정 사항에 따르면, 필라 2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의 계상 및 공시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에 영향을 받는 특정기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 Pillar 2와 관련된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 사항을 계상 및 공시하는데 있어 예외를 적용하였음을 나타내는 사실(일시적이나 필수적인 예외사항);
2. Pillar 2 세금과 관련된 현재 비용 또는 수익 내역;
3. Pillar 2가 실질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아직 발효되지 않은 기간 동안(즉,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된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PMK-136에 따라 향후 필라 2 관련 세금 납부 가능성은 파악할 수 있도록 이미 알려졌거나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정보.

해당 정보에 Pillar 2에 따른 모든 요구 사항을 반영할 필요는 없으며, 대략적인 범위 형태로 공시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고려될 수 있는 공시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국적 그룹이 Pillar 2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와 Pillar 2 관련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 주요 소재지와 같은 질적 정보.
2. 다음과 같은 양적 정보:
 - Pillar 2 세금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의 이익 비율 및 해당 이익에 적용될 수 있는 평균 실효세율에 대한 정보
 - Pillar 2가 발효됨에 따라 각 법인의 평균 실효세율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에 대한 정보

PMK-136은 2024년 12월 31일에 발표되어 2025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Pillar 2 규칙의 복잡성으로 인해 기업들은 본 PMK 규정 발표 후 관련 영향도를 평가하는데 있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제표 발행 시점에는 기업 입장에서 Pillar 2 관련 상세한 영향도를 계량화하거나 공시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은 질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관련 영향을 알 수 없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언급과 함께 세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Pillar 2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

Pillar 2에 대한 준비와 실행 계획을 고민할 시점이 왔습니다. Pillar 2 도입은 MNE의 세무 준수 환경을 변화시켰는데, Pillar 2를 준수하기 위한 초기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그룹 구조를 검토하여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합니다(예: UPE, CE, 매출 기준 등).
- 시행 첫 해 동안 Pillar 2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전환기 국가별 보고(CbCR) 세이프 하버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합니다(현재 그룹에서 제출한 CbCR이 적격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 포함).
- 2024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제표 보고를 위해 감사인과 Pillar 2 관련 예상 및 요구 사항에 대해 협의합니다.
- 관련 데이터 지표를 평가하고([PwC Data Input Catalog](#)를 참조 가능), 격차를 식별하며, 필요 시 새로운 프로세스를 설계합니다.
- Pillar 2 평가는 그룹이 운영하는 여러 소재지 평가를 포함하므로, 그룹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세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Pillar 2에 대한 전반적인 준수여부를 관리하기 위해 여러 가능한 조치들을 고려합니다.
- 마지막으로, 규칙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준수 의무를 염두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도움 및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PwC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PAC MNE를 위한 Pillar 2 준비 가이드에 대한 추가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ppendix A

PMK-136 에서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urs) 규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a. 영구적 세이프하버(Permanent Safe Harbour)** –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최소 요건 규칙(De Minimis rule) – 특정 소재지 내 CE 의 평균 GloBE 기준 수익과 당기 순이익이 각각 1,000 만 유로 및 100 만 유로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와 이전 두 회계연도에서 GloBE 손실이 발생한 경우;
 - 특정 회계연도 동안 특정 소재지에서 발생한 GloBE 소득이 실질기반 제외소득금액(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SBIE) 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특정 소재지의 실효세율(ETR)이 최소 15%인 경우.
- b. 전환기 국가별 보고서 세이프하버(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 – CbCR 보고대상 CE 가 2026년 12월 31일에 시작하여 2028년 6월 30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특정 소재지 내 CE 의 매출액 및 세전 이익(Profit Before Tax, PBT)이 CbCR 기준으로 각각 1,000 만 유로 및 100 만 유로 미만일 경우;
 - CbCR 상 특정 소재지 내 CE 의 PBT 가 SBIE 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 간이 ETR 이 2024년 및 2025년 각각 최소 15% 및 16%이며, 2026년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회계연도에는 최소 17%인 경우.

CbCR 은 적격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경우 적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PMK-136 은 적격 재무제표 요건, 간이 ETR 의 산정 공식, 그리고 CbCR 세이프 하버가 적용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MNE 그룹이 특정 회계연도에 세이프 하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소재지는 전환기 내 나머지 기간 동안 세이프 하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c. 특정 기업 및 그룹을 위한 전환기 CbCR 세이프 하버(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 for certain entity and group)**

PMK-136 은 다음의 기업에 대해서 CbCR 세이프 하버 적용에 대한 특별 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별도의 그룹으로 취급되는 합작 투자법인(JV) 및 그 자회사;
- 도관 법인 형태의 UPE 또는 배당 세액 공제 제도가 적용되는 UPE;
- 투자 법인.

- d. 전환기 UTPR 세이프 하버(Transitional UTPR Safe Harbour)**

UPE 소재지의 법인세율이 최소 20%일 경우, 2025년 12월 3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 동안 UTPR 세액은 0 으로 간주됩니다.

e. 비주요 구성 기업에 대한 간이 계산 세이프 하버(Simplified calculations Safe Harbour on non-material CE)

- 비주요 구성 기업은 규모와 중요성 측면에서 그룹 연결 재무제표에서 연결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 총 매출액이 5 천만 유로 이상인 비주요 구성 기업은 공인 회계 기준(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FAS) 또는 인정된 FAS에 따라 재무제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해당 간이 계산은 UPE 소재지의 CbCR 상 GloBE 수익, 소득, 및 조정대상조세를 사용합니다. UPE 소재지에서 CbCR 작성의무가 없는 경우, 대체적인 방법으로 그룹 내 다른 국가의 CbCR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소재지에 CbCR 작성의무가 없는 경우, OECD 등의 국제 기관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게 됩니다.

Your PwC Indonesia Contacts:

Abdullah Azis abdullah.azis@pwc.com	Gerardus Mahendra gerardus.mahendra@pwc.com	Peter Hohtoulas peter.hohtoulas@pwc.com
Adi Poernomo adi.poernomo-c@pwc.com	Hasan Chandra hasan.chandra@pwc.com	Raemon Utama raemon.utama@pwc.com
Adi Pratikto adi.pratikto@pwc.com	Hendra Lie hendra.lie@pwc.com	Riyadi riyadi.riyadi-c@pwc.com
Adrian Hanif adrian.hanif@pwc.com	Hisni Jesica hisni.j.jesica@pwc.com	Runi Tusita rungi.tusita@pwc.com
Alexander Lukito alexander.lukito@pwc.com	Hyang Augustiana hyang.augustiana@pwc.com	Ryuji Sugawara ryuji.sugawara@pwc.com
Ali Widodo ali.widodo@pwc.com	Irene Satyanagara irene.satyanagara@pwc.com	Sukma Alam sukma.alam-c@pwc.com
Aman Santosa aman.santosa-c@pwc.com	Kianwei Chong kianwei.chong@pwc.com	Surendro Supriyadi surendro.supriyadi-c@pwc.com
Andrias Hendrik andrias.hendrik@pwc.com	Lukman Budiman lukman.budiman@pwc.com	Susetyo Putranto susetyo.putranto@pwc.com
Angeline angeline.angeline@pwc.com	Made Natawidnyana made.natawidnyana@pwc.com	Sutrisno Ali sutrisno.ali-c@pwc.com
Anton Manik anton.a.manik@pwc.com	Mardianto mardianto.mardianto-c@pwc.com	Suyanti Halim suyanti.halim@pwc.com
Antonius Sanyojava antonius.sanyojava@pwc.com	Margie Margaret margie.margaret@pwc.com	Tjen She Siung tjen.she.siung@pwc.com
Avinash Rao a.rao@pwc.com	Marlina Kamal marlina.kamal@pwc.com	Turino Suyatman turino.suyatman@pwc.com
Ay Tjding Phan ay.tjding.phan@pwc.com	Nicholas Sugito nicholas.sugito@pwc.com	William Christopher wiliam.christopher@pwc.com
Brian Arnold brian.arnold@pwc.com	Nikolas Handradjid nikolas.handradjid@pwc.com	Yessy Anggraini yessy.anggraini@pwc.com
Dexter Pagayonan dexter.pagayonan@pwc.com	Novie Mulyono novie.mulyono@pwc.com	Yuliana Kurniadja yuliana.kurniadja@pwc.com
Enna Budiman enna.budiman@pwc.com	Oki Octabiyanto oki.octabiyanto@pwc.com	Yunita Wahadaniah yunita.wahadaniah@pwc.com
Esa Perdana esa.perdana@pwc.com	Omar Abdulkadir omar.abdulkadir@pwc.com	
Gadis Nurhidayah gadis.nurhidayah@pwc.com	Otto Sumaryoto otto.sumaryoto@pwc.com	

www.pwc.com/id

-  PwC Indonesia
-  @PwC_Indonesia

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 or send an email to id_contactus@pwc.com.

DISCLAIMER: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25 PwC Tax Indonesia.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Indonesian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